

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

I . 회부경위

1. 의안번호 : 제1206호
2. 제 출 자 : 서울특별시교육감
3. 제출일자 : 2019. 11. 1.
4. 회부일자 : 2019. 11. 5.

II . 제안이유

-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기금운용계획(안)을 편성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하는 것임.

III . 주요내용

-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(안)의 규모는 다음과 같음.

〈 기금운용계획(안) 규모 〉

(단위 : 천원)

구 분	2020예산(안)	2019예산	증 감	%
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	0	0	0	0
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	63,370,821	53,153,401	10,217,420	16.1

IV . 관계법령
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8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)

V. 검토 의견(수석전문위원 김창범)

1.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

- 동 계획안은 2019년 11월 1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 의해 의안번호 제 1206호로 제출되어 2019년 11월 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.
- 동 계획안은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방채 원리금 상환재원 확보를 위한 감채기금과 신청사 및 제주연수원 건립을 위한 건립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.

2. 주요 검토의견

가.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운용계획안

- 감채기금은 「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에 따라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별 상환재원 확보 및 조기상환을 목적으로 적립하는 기금으로,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도 감채기금 운용계획안을 「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3조제2항1)에 따라 0원으로 제출하였는바,

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11월 기준으로 자체발행한 지방채가 남아 있지 않고, 현재 남아 있는 교육채는 모두 국가가 채무를 부담해야 하는 지방채라는 점에서 2020년도에 동 감채기금을 적립하지 않기로 한 감채기금 운용계획안은 별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.

- 다만, 서울시교육청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감채기금을 조성하지 않았으며, ‘2020~2024년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(안)’의 ‘채무 전

1) 제3조(기금의 조성) ② 교육감은 매년 교육비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의 20%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거나 지방채 원리금을 직접 상환하여야 한다. 다만, 지방채가 없거나 지방채 상환재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망 및 관리계획'2)에서 밝힌 바와 같이 향후에도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 없다면, 동 기금의 존속여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.

나.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운용계획안

○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은 「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설치·운용 조례」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에 필요한 재원3)을 2016년부터 2020년까지 1,585억원 규모로 운용하기 위한 기금으로,

서울시교육청은 2019년도 현재까지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533억 2천 4백만원과 이자수입 8억 4천 1백만원 등 541억 6천 5백만원의 조성액 중 사업비 집행액 86억 6백만원을 제외한 총 455억 5천 9백만원을 적립하였습니다.

[표-1]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

(단위: 백만원)

연도별	조성액			집행액			잔액 (a-b)
	계(a)	전입금	이자 수입	계(b)	비용자성 사업비	기타 지출	
2016	5,928	5,909	19	-	-	-	5,928
2017	12,005	11,930	75	44	44	-	11,961
2018	28,369	27,958	411	967	967	-	27,402
2019	7,863	7,527	336	7,595	7,595	-	268
계	54,165	53,324	841	8,606	8,606	-	45,559

1) 수입계획

○ 2020년도 동 건립기금의 수입계획액은 633억 7천 1백만원으로,

2) '2020~2024년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', p.40.

3) 신청사 건립을 위해서는 교육부 특별교부금 400억원(예정) 및 자체 예산 847억원 등 총 1,247억이 필요하며, 연수원 건립을 위해서는 교육부 지원 없이 자체 예산 약 338억원이 필요한 상황임.

2020년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172억 3천만원과 이자수입 5억 8천 3백만원 및 2019년도 기금조성액(예치금) 455억 5천 8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

- 동 기금운용계획안의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에 대한 세부내역은 노이초 부지의 서울시로의 유상이관에 따른 비용 50억 6천 5백만원과 강남구 도곡동 토지 및 은평구 수색동 토지 매각 비용 95억, 그리고 기타매각 비용 2억 2백만원 및 2019년도 미적립 공유재산 처분대금 24억 6천 3백만원⁴⁾으로, 이는 2019년 동 기금운용계획의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수입액 대비 97억 3백만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.
- 이와 같은 동 기금운용계획안의 수입액은 동 기금 설치·운용 조례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출연금으로⁵⁾ 「202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수립 기준」의 수입계획 작성기준에 따른 것으로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.
- 다만, 종전 분납의 형태로 지급해오던 노유초 부지대금 처분방식이 일시납으로 변경되면서 이에 따른 차이로 발생한 처분대금 24억 6천 3백만원이 동 관리계획의 수입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아직 처분대금이 납부되지 않았는바, 서울시교육청은 동 기금의 수입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처분대금의 징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.

4) 노유초 유상이관 처분금액(일시납) 3,365,308천원-「2019년도 전입금 902,543천원(노유초 유상이관 분납 금액)=2,462,765천원

5) 「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설치·운용 조례」

제3조(기금의 조성) 기금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(이하 "교육비특별회계"라 한다) 소관 공유재산의 처분대금
2.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
3. 기금의 운용수익금
4. 그 밖의 수입금

[표-2]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수입계획

(단위: 천원)

재산명	처분금액	비 고
노이초 부지 유상이관(4차 분납금)	5,065,442	
강남구 도곡동 산6-40(1,917㎡) 토지 매각	6,000,000	
은평구 수색동 128-3 외 7필지 토지 매각	3,500,000	
기타매각	201,518	
2019년도 미적립 공유재산 처분대금	2,462,765	
예금이자	582,807	
합 계	17,812,532	

2) 지출계획

○ 2020년도 동 기금의 지출계획은 633억 7천 1백만원으로, 신청사 건립과 관련한 설계비, 시설비 및 감리비, 그리고 시설부대비 등 건설비 285억 1천만원과 예치금 348억 6천 1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

○ 동 기금운용계획안의 지출과 관련한 세부내역은 신청사 실시설계비 1천 9백만원과 시설비 264억 7천 2백만원, 감리비 19억 6천 9백만원, 그리고 시설부대비 5천만원으로, 전년도 신청사 건립비용(75억 9천 5백만원)보다 209억 1천 5백만원 증액된 것입니다.

○ 이와 같은 지출의 증가는 신청사 준공을 위한 시설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발생하는 시공비용인 바,

신청사 건립을 위한 원만한 사업추진과 동 기금 설치·운영 조례 제4조6)에 따른 기금의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되고,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.

6) 제4조(기금의 용도)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.

1. 건축비 및 토지매입비
2. 설계비 및 감리비
3. 그 밖에 부대시설비 등 건립에 필요한 경비

○ 다만 서울시교육청은 신청사 건립을 위한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에서 사업비와 사업규모를 축소하라는 부대의견으로 조건부 승인을 받았는 바,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사업 추진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.

- 또한 동 기금의 운용에 있어서 수입계획에 따른 기금의 조성이 원활히 이루어져 사업추진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.

[표-3-1] 2020 신청사 지출 현황

(단위: 천원)

항목	금액	비고
설계비	19,300	사후설계관리비
시설비	26,472,000	골조공사 70%(지하3층~지상 5층) 및 부대공사
감리비	1,969,000	12개월 공사 감리비
시설부대비	50,000	각종 수수료 및 분담금
소계	28,510,300	

[표-3-2] 2020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지출 현황

(단위: 천원)

분야	부분	정책	단위	세부	세부항목	'20년 지출액	'19년 지출액	증감
교육						63,370,821	53,153,401	10,217,420
	교육일반					63,370,821	53,153,401	10,217,420
					기관운영관리	28,510,300	7,595,112	20,915,188
					교육행정기관시설	28,510,300	7,595,112	20,915,188
					본청시설관리(신청사 건립)	28,510,300	7,595,112	20,915,188
					설계비(420-01-02)	19,300	4,595,112	△4,575,812
					시설비(420-03)	26,472,000	2,000,000	24,472,000
					감리비(420-04)	1,969,000	950,000	1,019,000
					시설부대비(420-05)	50,000	50,000	-
					직속기관시설관리(연수원 건립)	-	-	-
					토지매입비((410-01)	-	-	-
					예비비 및 기타	34,860,521	45,558,289	△10,697,768
					예비비 및 기타	34,860,521	45,558,289	△10,697,768
					내부유보금	34,860,521	45,558,289	△10,697,768
					예치금(710-04)	34,860,521	45,558,289	△10,697,768
					지출 합계	63,370,821	53,153,401	10,217,420

- 한편, 신청사뿐만 아니라 연수원 건립을 위한 동 기금의 설치목적에도 불구하고 동 기금계획안은 연수원 건립을 위한 기금의 운용에 대해 별도 계획이 없는 것으로 제출되었습니다.

이와 같은 계획의 미제출은 연수원 건립과 관련된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에서 사업계획 전면 재검토라는 부적정 결과⁷⁾에 따른 것인바, 서울시교육청은 제주연수원 설립에 대한 근본적인 사업 재검토와 함께 근본적으로 해당사업을 추진할지 여부를 조속히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
- **이상으로 「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」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**

7) '2019년도 정기 2차 중앙투자심사 결과',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-5823(2019.10.1.)

사업명	결과	부대 의견
서울교육청 청사이전	조건부	사업비 및 사업규모 축소
제주평화힐링 연수원 설립	부적정	사업계획 전면 재검토

[붙임1] 202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(공유재산 처분 내역)

(단위: 천원)

처분 기관	구분	재산명 또는 소재지	면적 (㎡)	납부자명	납부 구분	'20년 기준 분납회차	처분(예정) 금액	'20년도 적립예정액
본청	유상 이관	가칭 노이초 부지 (자양동 57-153)	3,577	서울특별시	분납	4회차 중 4회차	20,261,770	5,065,442
본청	매각	강남구 도곡동 산6-40	1,917	학교법인 연세대학교	일시납	-	6,000,000	6,000,000
동부	매각	동대문구 전농동 45-43	69	이○○	분납	20회차 중 13회차	135,240	6,086
동부	매각	동대문구 휘경동 302-9	15	윤○○	분납	10회차 중 4회차	44,545	4,009
서부	매각	서대문구 북아현동 3-489	20	김○○	분납	10회차 중 5회차	63,051	5,675
서부	매각	마포구 신수동 371-28	89	정○○	분납	10회차 중 4회차	660,057	59,405
서부	매각	마포구 아현동 386-113	9	이○○	분납	5회차 중 4회차	77,477	13,946
서부	매각	서대문구 연희동 88-38	9.4	김○○, 이○○	분납	10회차 중 3회차	36,385	3,275
서부	매각	은평구 수색동 128-3 외 7필지(수색6구역)	510	수색6구역 정비사업조합	미정		3,500,000	3,500,000
남부	매각	구로구 구로동 511-11	23	이○○, 강○○	분납	3회차 중 2회차	66,332	19,900
중부	매각	용산구 이태원동 231-23	56	이○○	분납	10회차 중 10회차	176,261	15,863
중부	매각	용산구 보광동 3-89	147	하○○, 이○○	분납	10회차 중 9회차	714,094	20,627
동작 관악	매각	동작구 본동 133-83	27	조○○	분납	7회차 중 5회차	119,610	17,087
동작 관악	매각	동작구 본동 133-82	43	정○○	분납	7회차 중 5회차	196,725	28,103
성북 강북	매각	성북구 삼선동3가 50-7	40.7	김○○	분납	20회차 중 17회차	52,096	2,331
성북 강북	매각	성북구 삼선동3가 50-50	49	손○○	분납	20회차 중 17회차	58,800	2,631
성북 강북	매각	성북구 삼선동3가 50-49, 50-51	49.3	최○○	분납	20회차 중 17회차	57,681	2,580
'19년도 미적립 공유재산 처분대금							-	2,462,765
계(17건)							32,220,124	17,229,725

관계 법령

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

[시행 2017.7.26.] [법률 제14839호, 2017.7.26., 타법개정]

제15조(기금의 통합·폐지)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의 폐지 및 제정·개정 절차에 따라 이를 폐지하거나 다른 기금과 통합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설치된 기금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이의 폐지 또는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.

1. 기금 설치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
2. 기금 설치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
3. 「지방재정법」에 따른 특별회계와 기금 간 또는 기금 상호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설치된 경우
4. 그 밖에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
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기금의 폐지 또는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.

지방회계법

[시행 2017.7.26.] [법률 제14839호, 2017.7.26., 타법개정]

제19조(결산상 잉여금의 처리)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마다 세입·세출 결산상 잉여금(剩餘金)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잉여금을 그 잉여금이 생긴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까지 세출예산에 관계없이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.

1. 다른 법률에 따라 용도가 정하여진 금액
2. 「지방재정법」 제50조에 따른 이월금

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
[시행 2016.12.29.] [서울특별시조례 제6362호, 2016.12.29., 타법개정]

제3조(기금의 조성)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교육비특별회계의 전입금
2. 기금의 운용 수익금
3. 기타 수입금

② 교육감은 매년 교육비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의 20%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거나 지방채 원리금을 직접 상환하여야 한다. 다만, 지방채가 없거나 지방채 상환재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설치·운용 조례

[시행 2016.12.29.] [서울특별시조례 제6362호, 2016.12.29., 일부개정]

제3조(기금의 조성) 기금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(이하 "교육비특별회계"라 한다) 소관 공유재산의 처분대금
2.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
3. 기금의 운용수익금
4. 그 밖의 수입금

제4조(기금의 용도)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.

1. 건축비 및 토지매입비
2. 설계비 및 감리비
3. 그 밖에 부대시설비 등 건립에 필요한 경비